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15조 일부개정〉

가.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 (안 제 57조의 3)

○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나.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및 수당 지급규정 변경(안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1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 일부개선·보완〉

○ 개발행위 운영방안 개정(입목본수도 규정 통일)

- 용어변경 :입목축척→입목축적(안 제18조제1항제1호)

○ 입목본수도 규정사항 삭제(안 제18조제1항제1호 각목 및 제5호)

4.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29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과 건조·보관시설에 대한 건폐률을 당초 20%이하에서 60%이하로 개정하여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농·임·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고자 하며,

○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와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상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변경 및 삭제하여 산지관련 허가사항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및 에너지절약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성주군주차장조례의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단서)

나.「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자동차기준을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 (안 제5조 제2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안”을 “관리지역” 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항)

라.「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5조 제 1항)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4. 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제11조, 제14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과「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 자동차기준을 변경하고, 주차요금징수 감면대상 차량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를 추가하도록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법적용의 혼란 및 상수도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 환경부에서 작성·배포한 「표준급수조례안」및 「수도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사용자인 군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재정비(안 제2조)

○ 수도급수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신설, 정비하여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

나. 사용수량의 인정(안 제26조)

○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 계량이 어려운 경우 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계량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규정 신설(안 제30조의 2)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주민편의 도모

라. 운반급수와 요금규정 신설(안 제32조)

○ 급수구역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급수규정을 조례에 정하여 주민편의 도모

마. 수도요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 등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기존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므로서 주민부담 경감

바. 수도요금의 할인규정 신설(안 제36조)

○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및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 경감

사.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신설(안 제37조)

○ 급수설비의 노후화 및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급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공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설비의 공사비 부담경감

아. 공업용수 단가 신설(안 별표2)

○ 성주정수장의 공업용수 전환 및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 전 공업용수 단가를 결정하여 반영

자. 제명 띄어쓰기 : 「성주군수도급수조례」를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로 함

4. 관련법률

○ 수도법 제 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 환경부에서 작성·배포한 「표준급수 조례안」및「수도법법」의 일부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사용자인 군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각종 용어의 정비, 사용수량의 인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규정 신설, 수도요금 감면 대상확대 등 주민 편의도모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전부개정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